

研究開發投資에 대한 主要國의 稅制支援



李 學 鉉

〈經濟企劃院 外資契約調查官〉

① 序 言

1, 2, 3 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推進에 따라 우리 경제는 크게 發展하였으며 第 4 次 5 個年計劃이 시작되는 今後에도 우리는 資源不足 등 계속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環境을 克服하고 自立經濟達成을 위해 政府, 企業이 合心하여 努力할 段階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들이켜 보건대 이제까지의 산업발전은 주로 先進技術 및 資本을 바탕으로한 外資導入이나 借款, 그리고 低賃金을 土臺로한 勞動集約的인 기업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後進된 產業構造는 이제까지의 경제성장에 寄與하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成長過程에서 적지 않은 問題點들이 露呈되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達成하게 될 100億弗臺의 輸出과 1,000弗의 1人當國民所得, 그리고 앞으로도 持續될 경제성장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優秀한 頭腦를 바탕으로한 기업의 研究開發投資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國際競爭趨勢는 技術競爭이란 樣相으로 變貌해 가고 있으며 어느 國家가 새기술에 의한 優秀商品을 먼저 生產, 輸出하느냐에 따라 世界市場을 先占하게 되는 만큼 우리도 하루속히 自主技術開發과 企業化를 통한 先進技術隊列에 參與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民間企業이 앞장서서 新技術의 開發投資에 積極 나서야 할 것은 물론, 이를 민간기업의 研究開發活動을 誘導, 廉獎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助長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민간기업의 自發的인 연구개발추진에 多大한 效果를 거두기 위한 方案으로서 補助金의 交付 또는 金融上의 融資制度등이 있다. 하겠으나 輸出產業의 金融支援등의 現與件을勘案하면 기업에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稅制上の 優待措處가 所望스럽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의욕을 북돋아 주고 產業構造高度化를 통한 輸出商品의 對外競爭力強化를 위해서 기술개발과 關聯된 技術情報, 技術訓練 및 試驗研究施設에 대한 取得稅, 登錄稅, 財產稅, 事業所得稅等 地方稅制도 內國稅制의 立法趣旨와 同等한 次元에서 政策的인 配慮가 要望되고 있다.

이와같이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支援稅制措處는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歐美, 日本等 工業技術先進國에서 施行하고 있음을 土臺로 하여 우리의 制度와 外國의 制度를 比較, 그 長短點을 研究檢討함으로써 앞으로에 있어서의 國內企業의 研究開發造成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 方案을 살펴보기로 한다.

② 우리나라의 技術開發支援稅制

1. 技術開發準備金에의 租稅特例

(1) 8.3措置 緊急命令(第63條)에 의한 租稅特例

국내에서 製造業을 營爲하는 者가 기술개발에 所要되는 費用充當을 위한 技術開發準備金을 積立한 때에는 ① 技術을 導入한 자가 當該事業年度(또는 課稅期間)에 支給 또는 지급할 技術導入價에相當하는 金額 ② 當該事業年度(또는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운데 하나만을 選擇하여 당해사업년도 또는

과세기간의 損金 또는 必要經費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준비금을 計上한 자가 材料, 製品, 機械裝置 또는 工程을 改善하거나 新로운 生產方法을 찾아내기 위한 試驗研究費 및 技術訓練費를 지급할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계상되어 있는 기술준비금과 먼저 相計하도록하는 特例를 갖게 된다.

(2) 租稅減免規制法(法第4條9)에 의한 特例

內國人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술개발 및 革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範圍안에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算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新技術企業화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1) 新技術企業화投資에 대한 控除稅額

特許받은 國內技術의 開發成果 또는 KIST가 기술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企業화한 것으로 그 사업의 固有目的에 直接 사용되는 主된 機械 또는 公害防止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8(국내에서 생산, 제조된 資材와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稅額을 그 투자가 完了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및 法人稅에서 控除해주고 있다(租減法 第4條 8).

(2) 減免 및 控除稅額의 使用

국내제조업자가 당해사업연도의 利益處分에 있어서 감면 또는 공제받은 상당액을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서 적립하고 當該企業의 固有目的에 직접 사용되는 主된 기계 또는 工場買入이나 建設을 위한 투자를 함에 있어 5년내에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租減法 第16條).

(3) 特別減價償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研究試驗用施設中(運休中에 있는 機械設備外)의 事業別固定資產設備에 대하여는 처음 1회에 限하여 그 取得價額의 100분의 50을 特別償却하도록 규정하였다(所得稅法施行令 第51, 81條).

③ 主要國의 技術開發支援稅制

1. 美國

가. 租稅의 特別減免

(1) 投資稅額控除

1975년1월 이후 기업의 일정한 新規投資(耐用年數가 3년이상의 減價償却資產의 購入, 다만 일정한 中古資產의 구입을 포함한 建造物 및 國外에서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 當該投資額의 10%에 상당하는 稅額控除가 인정되고 있다.

(2) 內國國際去來法人(DISC)

總收入의 95%이상이 輸出關聯所得이 되는 등 일정의 요건을 充足한 美國法人인 DISC가 研究開發投資를 하면 輸出關聯所得의 50%에 대하여 이것이 株主에게 分配될 때까지 課稅를 延期하고 殘餘의 소득은 課稅年度의 末日에 分배된 것으로 보고 株主에 대하여 과세한다.

(3) 西半球事業法人

오로지 西半球(美大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總所得의 95%이상을 國외로부터 去來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法人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의 48분의 14를 공제해 주고 있다.

나. 特別償却制度

(1) 初年度 特別償却

研究開發投資企業의 耐用年數 6年以上의 資산(建物, 無形資產은 제외)에 대하여는 價額 1萬弗이하의 部分은 初年度에 20%의 追加償却을 인정하고 그 殘額은 普通償却으로 인정한다.

(2) 公害防止施設의 特別償却

1975年 以前에 設置된 公害防止施設에 대하여는 累加상각기초가액의 경우 15年/耐用年數相當分은 通常의 상각에 대신하여 60개월의 均等償却을 선택할 것을 인정하고 잔액은 보통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日本

가. 租稅의 特別減免

(1) 法人稅額의 特別控除

適用年度(1967. 6. 1~1978. 3. 31의 사이에開始하는 사업년도)의 기업의 試驗研究費額이 基準年度(1967. 1. 1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直前事業年

度)부터 적용년도의 직전사업년도까지의 試驗研究費額에서의 最大額을 超過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額의 20%相當額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2) 技術等 海外去來關係所得 特別控除

指定期間(1964. 4. 1~1978. 3. 31)內의 日字를 포함한 各事業年度에 있어서 기술등 海外去來에 의한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對外支拂手段을 代價로 하는 ① 工業所有權의 讓渡등에 의한 수입금액의 55%, ② 著作權의 양도등의 수입금액 및 콘설팅業務의 수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50%를 限度)을 손금에 算入해 준다.

나. 特別償却制度

(1) 特定設備등의 特別償却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特定設備등에 대하여는 보통상각에다 初年度에 다음과 같이 割增特別償却을 하고 있다(租稅特別措置法 第43條).

① 公海 방지시설은 100분의 50(다면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3年間 每年으로 30%균등분할상각)

② 無公害化生產設備 100분의 25

③ 廢棄物再生處理設備 100분의 25

④ 省에너지設備 100분의 25

⑤ 高精密產業機械 100분의 25

⑥ 情報處理의 高度化에 필요한 電子計算機 100분의 20

⑦ 原子力發電設備 100분의 20

(2) 低開發地域의 開發用工業機械등의 초년도는 100분의 25 特別상각(租特法 第45條)

(3) 중소기업이 제조업, 건설업등의 사업에 사용할 기계장치의 초년도 6분의 1의 特別상각(租特法 第45의 2)

(4) 特定備蓄設費등의 5년간 40%增의 割增償却(租特法 第48條)

(5) 中小企業構造改善등 事業用 共同施設의 3분의 1(건물 및 그 附屬設備는 5분의 1)의 特別상각을 인정해 주고 있다(租特法 第51條).

3. 英 國

가. 租稅의 特別減免 및 特別償却

(1) 期初償却制度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감가

상각 이외에 초년도에 다음과 같은 特別상각을 인정하고 있다.

① 新規產業用建物 50%

② 鎳業用, 油井用施設에 대해서는 開發地域 및 아일랜드지역은 100%, 기타지역은 40%

③ 游漁 15%

(2) 產業用 機械設備의 初年度特別償却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支援方案으로 1970년 10월 27일이후 개발지역에 있어서 取得된 新規產業用機械設備에 대해서는 초년도에 100%의 상각을 인정하였으며 1972년 3월 22일이후 취득한 산업용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초년도에 100%의 特別상각을 인정하게 된다.

(3) 試驗研究施設등의 債却

1962년 11월 6일이후에 기업에서의 試驗研究를 위한 資本的支出에 대해서는 초년도에 100%의 特別상각을 인정하고 있다.

4. 西 獨

가. 租稅의 特別減免

(1) 投資稅額控除

聯邦政府는 顯著한 景氣後退의 경우에는 政令에 의하여 一定期間(1년을 초과치 않는다)內에 취득한 固定資產의 取得價額 또는 製造價額을 7.5%를 限度로 하여 法人稅額의 公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취득년도에 公제하지 못했던 금액은 翼年度에 한하여 移越控除하고 있다.

나. 特別償却制度

(1) 研究開發用資產

기업의 일정한 研究開發用資產에 대해서는 一般償却 이외에 5년간에 動產 50%, 不動產 30%의 特別상각을 인정한다.

(2) 研究開發業體의 工業用建物에 대해서는 일반상각외에 建築年度 및 翼年度에 建築價額의 10%를 特別상각한다.

(3) 研究開發業體의 公海 방지시설을 198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제조한 것은 취득 또는 제조가액의 60%까지 特別상각한다.

